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85호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321 호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치 수 과 2
(도림동 67-9번지)
- 공 고 제 1329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기 획 예 산 과 5
관련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321호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8.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2.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8.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도림동 67-9번지 일원	미상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6. 7. 28.까지

7.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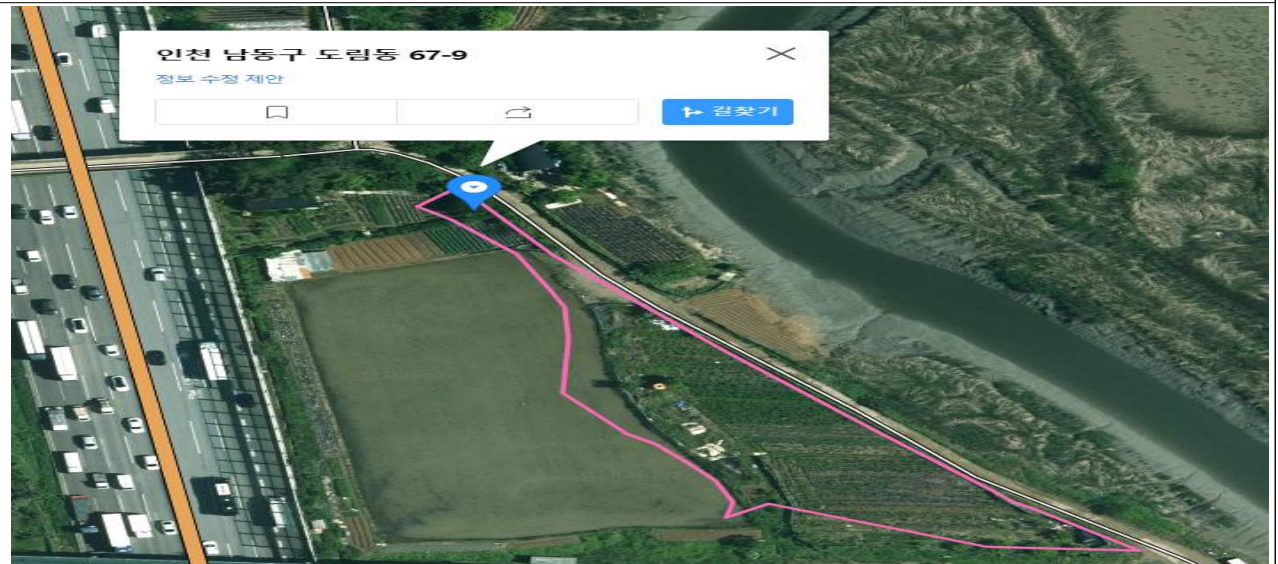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남동구청 치수과 하천팀(☎032-453-8464, 846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도림동 67-9번지 일원)



현장사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329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7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
- 회계감사인 자격, 선정절차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
- 회계감사 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연 락 처: 전화 453-2064,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끝.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
- 회계감사인 자격, 선정절차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
- 회계감사 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단 회계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공단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회계·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공단이 주관한다.

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은 남동구 및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⑤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임대상자 추천 특례)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 공개 모집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2.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이어서 2인 이상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그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추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출 것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

제12조(회계감사 계약) ① 공단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제4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정 량 평 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감사 수행 실적 . 징계현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0	
정 성 평 가	. 감사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 방안 . 기밀 및 감사자료 보안관리 체계 . 소요 예산의 적정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합 계		100	

2. 평가방법

- 가. 평가 시 평가항목(내용), 항목별 점수 및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나. 정량평가는 공단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다. 정성평가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라.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 ②항 생략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항 생략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④항 생략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⑨항 생략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항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